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 외 32명
- 나. 의안번호 : 제 2400 호
- 다. 발의일자 : 2025. 2. 3.
- 라. 회부일자 : 2024. 2. 6.

2. 제안이유

- '24. 1. 18.자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전담 조직의 설치근거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대행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사.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아.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자.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 다. 기 타 : 입법예고(2025. 2. 11.~8.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 요

- 본 제정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주요 내용

조 문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시설”, “광역비축창고”, “자체비축창고”, “개별비축창고”에 대한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자치구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
제5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 가능
제6조 (전담 조직의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둠 전담조직의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2.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인력의

	<p>관리계획의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 4.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 5.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6.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
<p>제7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의 장이 됨 •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 •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운영 가능 •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p>제8조 (자원통합관리 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전담 조직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검사 가능 •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p>제9조 (대행계약의 해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계약 해지 및 조치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p>제10조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지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앙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내 자치구 다.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p>는 재난관리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할 경우 고려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시의 지형적 특성 시에 거주하는 인구수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 가능
제12조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 재난관리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지정 등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수습에 필요한 물품 등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잉 비축으로 불용처리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기후변화, 신종재난 등 재난의 대형화·복잡화되는 상황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면서 '23.1.17일자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되었고 '24.1.18일자로 본격 시행중에 있음.

- 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질·인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를 위한 공급망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자원 공급·동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 취득·보관 및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법 제3조1)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 법상 시·도지사²⁾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에게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법 제12조~제14조)’, ‘재난관리물품(법 제28조, 제30조)’, ‘시·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법 제44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법 제45조)’, ‘동원명령(법 제50조)’, ‘동원훈련(법 제55조)’, ‘지도 및 감독(법 제58조)’, ‘보고 및 검사(법 제59조)’ 등에 관한 책무 및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표] 참조).

[표] 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및 권한

법(「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제3조

-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p>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시장의 책무)</p>
<p>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할구역에 있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④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기술 개발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제5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p>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장관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산하기관등: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4.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시·도지사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산하기관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서식(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입출력 자료서식을 말한다)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특별재물조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및 소속·산하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

제10조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p>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 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p>	
<p>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u>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재산에 관하여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u>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자원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관하여 그가 소속한 기관·단체·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제44조(시·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① <u>시·도지사</u>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p> <p>② <u>시·도지사</u>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p>③ <u>시·도지사</u>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u>조례</u>로 정한다.</p>	<p>제6조 (전담 조직의 설치 등)</p>
<p>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u>시·도지사</u>는</p>	

<p>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재난관리물품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비축시설에 보관된 재난관리물품을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산하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p> <p>제8조 (자원통합관리센터 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p> <p>제9조 (대행계약의 해지 등)</p>
<p>제50조(시·도지사의 동원명령) ① 시·도지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59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 <p>② 시장·군수·구청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시·군·구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p>	
<p>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동원훈련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p> <p>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정보센터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원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따라서 동 제정안은 이같이 상위법에서 부여된 시장의 책무 및 권한을 근거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로, 동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이미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조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8. 7.	2024. 8. 12.	2024. 11. 11.	2024. 12. 6.
조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제4조(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 기업의 표시)	제5조(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 기업의 표시)
	제6조(전담 조직)	제6조(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제6조(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등)
	제7조(지역자원통합관리 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제8조(비축시설에 보관 하는 재난관리물품 등)	제8조(비축시설에 보관 하는 재난관리물품 등)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센터 운영 대행)
	제9조(지역자원통합관리 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제9조(지역재난관리지원 기업의 표시)	제9조(지역재난관리지원 기업의 표시)	제9조(대행 계약의 해지 등)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제10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제10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	-	-	제11조(비용부담)
	-	-	-	제12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시설”, “광역비축창고”, “자체비축창고”, “개별비축창고”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
4. “자체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체비축창고를 말한다.
5.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치구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 먼저, 안 제2조제1호에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법 제45조제1항3)에 따라 시장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

- 3)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재난관리물품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비축시설에 보관된 재난관리물품을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산하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대행에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같은 조 제2호부터 4호까지의 “비축시설”, “광역비축창고”, “자체비축창고”에 대한 정의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4)제2조제1호 및 제3조 각호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비축시설”, “광역비축창고”, “자체비축창고”에 대한 정의

용어	정의	인용
비축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포장·가공·출납·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고시 제2조제1호
광역비축창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	고시 제3조제1호
자체비축창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는 제외한다)	고시 제3조제2호

- 다만, 본 조례안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자치구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개별비축창고’로 별도 정의하고 있으며,
-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별도로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체비축창고’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3호, 2024. 3. 29., 제정.]

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안 제4조)

- 안 제4조는 자치구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시장은 자치구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한다.

- 이는 법 제44조5)에 따른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 연장선에서 시장의 역할 및 위계를 규정한 것이라 사료되며 합당한 조치라 판단됨.

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안 제5조, 별표)

- 안 제5조는 법 제12조6)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

- 5) 제44조(시·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6)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할구역에 있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로 하여금 안 별표에 제시된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 다음 [표]와 같이 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도안과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표] 도안 예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담 조직의 설치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의 설치근거와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
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

- 먼저, 제1항과 관련하여 법 제44조제3항은 시·도지사도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며,

- 제2항은 전담 조직의 수행업무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지역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명,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응원에 관한 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어 전담 조직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소속 자치단체 명의 표기 오류가 있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관리센터의 장 선임, 광역비축창고, 개별비축창고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7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먼저, 제1항은 ‘전담 조직의 장’을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장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대신에 법 제45조제4항에서 법이 규정한 사항 외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통일성,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합당한 조치라 여겨짐.
- 다음으로, 제2항은 관할 지역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제3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거점별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6)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행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 보고, 운영 실태 확인·검사,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제8조(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전담 조직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법 제45조제3항7)은 시·도지사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행 근거를 두는 측면이라 이해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제2항과 제3항은 대행업무 수행의 적법성, 성실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대행업무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운영 실태를 확인·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7)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재난관리물품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비축시설에 보관된 재난관리물품을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산하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대행계약의 해지(안 제9조)

- 안 제9조는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의 대행계약 해지 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9조(대행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사유를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대행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계약해지 및 조치를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됨.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법 제19조8)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재난관리물

8)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폐업·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물류기업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류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원명령 또는 준비 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 해제토록 하고 있음.

8)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광역비축창고 및 개별비축창고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대상, 종류·품목 및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0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지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내 자치구

다.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시의 지형적 특성
5. 시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 먼저, 제1항은 광역비축창고 또는 개별비축창고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을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중앙행정기관, 시 관할 내 자치구,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자원관리관이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은 고시 별표 3에 불도저, 지게차, 제설제, 마스크, 붕대 등 172종의 자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자원관리관의 재량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토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음으로, 제2항은 비축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품목 및 수량을 결정할 경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및 비축관리기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시의 지형적 특성 및 거주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는데, 비축시설의 한정된 공간을 감안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재난관리물품을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 하겠음.

9)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9)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1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은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국가·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

- 9)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5.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6. 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7.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8.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9.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10.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11.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 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재난관리물품·재난관리재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음.

- 한편, 법 제46조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통합 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겠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들이 협력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4.1.18.)에 따라,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서울시가 법정 소임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포시, 전담 조직 설치·운영,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지정,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됨.
-